

영등포구의회
제14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5. 27.



行 政 委 員 會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수정 허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·시달되어 재래시장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.

■ 개정내용

-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(제13조)
 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아케이드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50% 감면 해 오던 것을 100%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

■ 세수 감소 예상액 (2009. 4. 30 현재)

- 사리가 시장 1건으로 391,860원 감소 예상

■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,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에서 “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” 과 관련, 지방세를 추가 감면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수정허가 된 부분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5. 27.

보고자 : 권 오 운

관 계 법 령

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0조 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(이하 "시설현대화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·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업시설 :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, 보수 및 수선
 2. 공동시설 :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, 창고, 상인교육시설, 전기·가스·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·개량 및 관광(테마)거리 등의 조성
 3. 고객편의시설 :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, 진입로, 화장실,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·확장 및 보수 등
 4.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
- ②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, 사업별 지원한도,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9조 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)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(이하 "시설현대화사업"이라 한다)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
가.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
나. 시장 건물 내·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, 보수 및 수선

다.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장

라.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, 보수 및 수선

2.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

가. 비 가리개,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·개량

나. 공동판매장,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·개량

다.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, 전기·가스·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·개량

라. 냉·난방시설물 등의 설치·개량

마. 관광(테마)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·개량

3.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

가. 주차장, 진입로 등의 설치·확장 및 보수

나. 고객지원센터, 화장실 등의 설치·확장 및 보수

4. 공설시장

건물·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

②중소기업청장은 [법 제20조제1항](#)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,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,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.

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되,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

2.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

4.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·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

④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